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안내 (1-2판)

2020. 12



목차

│. 개 요 / 1
1. 목적1
2. 운영방안1
Ⅱ. 검사관리 / 4
1. 검체관리4
2. 검사접수5
3. 검사의뢰 및 결과보고6
Ⅲ. 행정사항 / 7
1. 보고내용 및 작성요령7
2. 지원내용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 9
서식 1. 기관별 검사관리(의뢰)대장 / 17
2. 검체 인수·인계 양식 / 18
3. 시도별 선제검사 실적 보고 / 19
4. 물품관리 대장 / 20
부록 1.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담당자 연락처 / 21
부록 2.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의사항 / 22

부록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검사(취합검사) 가능기관 / 23

I 개요

동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에 한정한 지침으로, 검사 이행 점검 등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 담당 부서 등과 협의하여 실시

1. 목적

○ 요양 및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 특히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통해 감염원을 차단할 필요 있음

〈집단감염 분석 결과(최근 1개월)〉

- ○(**발생현황**) 집단감염 발생사례 총 26건 모니터링(774명 환자 발생)
 - (지역) 수도권 15건(서울 8, 경기 5, 인천 2), 비수도권 11건(부산 2 등)
 - (유형) 요양병원·시설 17건(68%), 종합병원·의원 9건(32%)
 - * 요양병원 8건, 요양시설 8건, 정신병원 1건, 종합병원 6건, 의원 3건
- ○(**감염경로) 종사자**로부터 전파 13건(50%), **환자·이용자**로부터 전파 7건(27%), **간병인력**으로부터 전파 6건(23%)

2. 운영방안

1) 주요내용

- 전국 요양·정신 병원 및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0.12.21.(월)일~2020.1.3.(일)까지 수도권은 주1회, 비수도권은 2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 2021.1.4(월)일 이후부터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주1회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도록 강화
- 다만, 보건소는 관내 대상 기관 및 종사자 수를 고려하여 특정일에 검사 물량이 집중 되지 않도록 기관별 검사 일정을 사전 조정하여 원활하게 검사가 진행되도록 조치

2) 시행기간

○ 2020.12.21.(월). - 별도 안내 기한까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 고려 기간 변경 가능)

3) 검사대상

- 요양·정신병원 및 요양·정신시설 종사자 등 약 42만명
-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추가 (약 1만명)

4) 검사방법

- 비인두도말 PCR(취합) 검사(보건소를 통한 수탁검사 의뢰). 비용은 국비 100% 지원
- * 신속항원진단검사는 주기적 선제검사 사이에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필요시기관에서 구매하여 사용

5) 검체채취 방안

- (요양·정신 병원) 기관내 의료인력 등을 활용하여 자체 검체채취
- (요양·정신 시설 등) 시설 자체 계약의사와 간호인력을 활용하여 검체채취하거나 보건소 여건에 따라 순회 검체채취,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사 등 협의하여 진행
 - * 보건소에서는 각 시설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1~2인 명단을 제출받아 인력을 구성하여 교육 후 대상자 검체채취 가능

6) 감염관리

- 검사 대상자는 항상 마스크 착용
- 검체 채취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권장** 및 손 위생 준수 철저
 - * 긴팔가운 4종 세트(①)와 전신보호복(레벨D, ②) 선택 사용 가능(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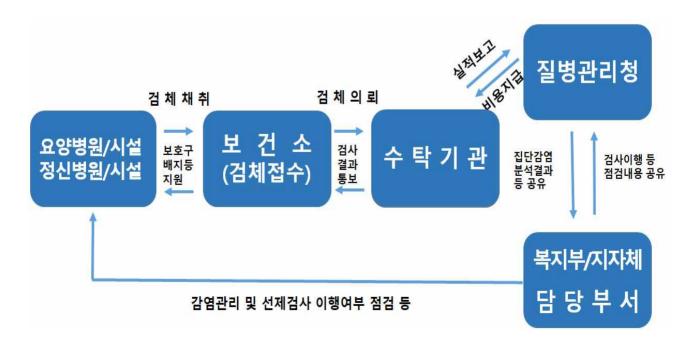
- ① 호흡기 분비물 접촉 유의
- ② 검사대상자의 체온 측정시 소독 등 감염관리 철저
 - * 『페기물관리법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및 오염 세탁물류(환자 침구, 환자복, 분비물이 묻은 린넨류) 등을 모두 포함

- 검체채취 장소 환경소독 실시
- ① (소독 장소) 출입문 손잡이, 대기의자, 접수창구 등 사람의 접촉이 많은 곳
- ② (환경소독제)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권장), 알코올(국소 표면인 경우) 등이 포함되며, 살 균력이 입증된 바이러스용 소독제^{*} 사용 가능 (부록 1. 환경소독제 유의사항 참조)
 - *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WHO(세계보건기구), ECDC(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로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량·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
- *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농도 5%) 사용시 희석액 만드는 법(예시)

최종 염소 농도	희석액 만드는 방법							
0.1% (1,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1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0.5% (5,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5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 * 원액 필요량 계산법: 희석액 제조량 x 최종 염소농도: 제품 원액농도, (예시) 500mlx0,1:5=10ml
- * 환자 혈액·체액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5,000ppm
-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은 알코올(70%) 사용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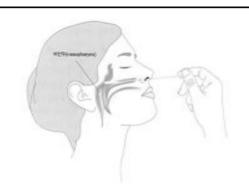


Ⅱ 검사관리



1. 검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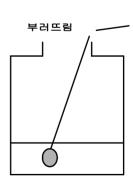
- (검체 종류) 비인두도말물
- (채취 방법)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함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 (4°) 에 보관
-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
-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4°C 유지)



○ (검체 포장)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 기관명, 검체종류, 검체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구 분	1차 용기	2차 용기	3차 용기
포장용기			Street and American Control of the C

<3중 포장용기 예시>

2. 검사접수

- 기관의 검사관리 담당자는 아래 <서식 1> 검사관리(의뢰)대장(엑셀) 작성하여 관리
- * 시군구, 기관명, 검체채취일, 성명, 생년월일, 체온, 검사방법, 증상유무, 증상내용 , 검사기관명
- ** 집단감염 관련 분석 등을 위해 향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접수대장 예시] 기관명 : 요양기관번호 : 검사관리(의뢰)대장													
기관	담당지	ŀ		연락처										
순반	! 시도	시군구	기관 구분	요양 기관 번호	검체 번호	검체 채취일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체온	증상 유무	증 상 내용	검사 결과	기타
1			요양 병원		시설명 -연번	2020-12-21			남	37.3	1	발열 두통	양성	
2			정신 병원		시설명 -연번	2020-12-21			여	36	0	-	미결정	
3			정신 요양 시설		시설명 -연번	2020-12-21			남	36.5	0	-	음성	

- 검체채취 장소에서 방문자(검사대상자)에게 체온 측정, 검사방법 설명 등
- 검사 결과의 정확성, 효율성 등을 고려 비인두도말 PCR 실시(취합검사법)

3. 검사의뢰 및 결과보고

- **(검사의뢰)** 기관(시설)은 검체와 함께 검사관리(의뢰)대장 <서식1> 및 검체 인계인수양식 <서식2>**를 보건소에 의뢰 (이메일 송부 가능)
 - * (주의사항) 취합(pooling) 검사를 위해, 취합 대상자별 검체 및 의뢰서 정보를 일치하게 묶어서(2~5개) 검사기관에 의뢰 예시) 22개 검체 취합 검사시 5개*4개 검체 밴드 + 2개*1개 검체 밴드 의뢰

○ (검체운송)

- (각 기관→관내 보건소) 아이스박스로 3중 수송용기를 포장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운송
- (보건소→수탁검사기관) 해당 수탁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 (운송조건) 4℃ 유지하여 즉시 수송

○ (검사결과 보고)

- (수탐검사기관) 검사종료 후 신속히 검사결과를 의뢰한 보건소로 통보하고, 매주(금) 오전 10시까지 전주 검사실적을 질병관리청 대응지원팀(khc1617@korea.kr)로 이메일 송부
- * 단,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789, 7790)과 검사의뢰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 (보건소) 검사관리(의뢰)대장 <서식1> 중 검사결과를 기재하여 해당 기관(시설) 및 시도에 제출
- * 보건소는 양성자에 대해「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 감시 메뉴에 입력·보고
- (시도) 검사시행 결과보고 <서식3>를 매주(금) 오전 10시까지 질병관리청 질병대응 센터(각 센터)로 이메일 송부
- (기관/시설) 검사결과를 개인에게 통보 및 역학조사 협조 등 사후조치

Ⅲ 행정사항

1. 보고내용 및 작성요령

가. 검사실적보고

○ 시도는 전주 실적을 '검사시행 실적보고' 〈서식3〉에 작성하여 <u>매주(금) 오전</u> 10:00시까지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에 제출 (비수도권도 동일)

[보고 언	[보고 엑셀양식]							
	검사시행 실적보고							
<u>시도</u>		담당자	성명	(연락처)	검사일	일:	
					검	검사인:		
시도	기관구분	개소수	검사대상(명)	계	양성자수	음성자수	진행중	비고
합계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i>정신요양</i> ·							
	개활시설							
	양로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나. 검사관리(의뢰)대장 관리

- 기관(시설)에서는 검사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검사결과, 체온 등을 엑셀양식으로 작성하여 보건소에 보고하고, 자체적으로도 관리
- * 향후 역학조사 등 필요시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요청할 수 있음

[접	수다	장	વે	시	1

기관명 :

검사관리(의뢰)대장

기관 담당자

연락처

순번	시도	시군구	기 관구 분	요양 기관 번호	검체 번호	검체 채취일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체온	증상 유무	증상 내용	검사 결과	기타
1			요양병원		시설명 -연번	2020-12-21			남	37.3	1	발열 두통	양성	
2			정신병원		시설명 -연번	2020-12-21			Ф	36	0	1	미결정	
3			정신요양 시설		시설명 -연번	2020-12-21			남	36.5	0	-	음성	

○ 작성 요령

- (기관구분)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mark>양로시설, 중증장앤거주시설</mark> 중 구분 기재
- (검체번호) 시설명-연번을 작성
- (검체채취일) 실제 검체 채취가 실시된 날짜 기입
- (성명) 성명 작성
- (생년월일) 1999.09.09. 형태로 작성
- (성별) 남, 여 작성
- (체온) 검사시 실측한 체온 기입
- (증상) 검사시 증상유무 확인 및 증상내용 작성
- · 증상이 있는 경우 '1' 입력, 없는 경우 '0' 표기,
- · 증상내용은 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근육통, 두통, 오한, 미각 소실, 후각소실 등 입력
- (검사결과) 비인두도말 PCR 검사 결과 기입
- (기타) 피검사자 관련 조치사항 등 기록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개인보호구, 검채체취 VTM*, 수송용기*, 검사비(국비 100%)
 - * 최초 검사분 일부에 한하여 현물 지원. 이후 지자체(보건소)에서 구매·사용
- (지원방법) 개인보호구, 검채체취 VTM, 수송용기 각 시도에 배포예정
 - 보건소는 보유 중인 물품을 우선적으로 기관(시설) 배포, 이후 시도에 배포된 물품 보충
 - 보건소는 <서식4> 에 따라 배분된 물품에 대해 대장 기록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 적용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
- 검역, 이송, 역학조사, 선별진료, 진료, 처치,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 검사, 수술, 기구관리, 환경관리, 사체관리 등

□ 주요내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 선택, 착·탈의 및 주의사항, 의료폐기물로 배출



□ 사용 원칙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또는 공기매개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
-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보관하지 말고 폐기
-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상황별 권장범위

-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눈, 손,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N95 또는 KF94 이상), 고글 또는 안면보 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
-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일회용 장갑 (Glove)	접촉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Gown)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튐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전신보호복 (Coveralls) 덧신 (Shoe covers)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튐		
장화 (Boots)	혈액, 체액이 신발에 튐	신발덮개 대신 착용 •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 노출위험에 따라 선택	
모자 (Hair cap)	머리의 오염	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9
고글 (Goggle)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눈의 점막 오염 방지 고글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안면보호구 (Face shield)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고글 대신 착용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 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No. of the last of
호흡기보호구 :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적용상황 예 : • 의심/확진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의료 종사자,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 • 기침유도 시술 시 •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1 THE STATE OF THE
호흡기보호구 : PAPR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전지충전, 필터교환, 장비 소독 등 철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함 파손,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전 수리,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함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d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	<u>₹</u>		전신 보호		눈 보호		
구분 	상황, 행위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¹⁾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전신보호복 (덧신포함)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검역(검역조사)		•		•					
검역 	검역(역학조사)		•		•	● (선택 사용	용 가능)	•		
선별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	•				
진료소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	● (선택 사용	용 가능)	•		
	이송(구급차 운전자)2)		•		•					
이송	확진/의심 환자 이송(검역관 보건소2원 응급구조사등)		•		•	● (선택 사·	•			
	의심환자 동승 보호자	•								
	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선택 사	용 가능)	•		
진료	에어로졸 생성 처치 ³⁾		(선택 시) 사용 가능)	•	● (선택 사	용 가능)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선택 시) 사용 가능)	•	● (선택 사	용 가능)	•		
	호흡기 검체 채취		(선택 시	나용 가능)	•	● (선택 사	용 가능)	•		
검체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 ⁴⁾⁵⁾		(선택 시	용 가능)	•	● (선택 사	용 가능)	•		
관리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					
장례	사체 이송, 안치		•		•	● (선택 사	용 가능)	•		
청소· 소독	청소 · 소독 ⁶⁾		•		•	● (선택 사	용 가능)	•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선택 사	용 가능)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로 제한.
- 1) 의심·확진환자 구역의 진료, 처치, 간호, 검사,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이중장갑 착용
- 2)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 3)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심폐소생술, 기관지내시경술, 기도분비물 흡인, 기 관관리(tracheostomy care), 사체부검, 비침습적 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 분무요법 (nebulizer therapy), 가래배출 유도의 처치, 상황, 행위를 말함
- 4)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
- 5)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긴팔), 일회용 장갑 착용
- Lee H, Ki C-S, Sung H, et al.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 Infection & chemotherapy. 2016;48(1):61-69.)
- 6) 병실, 구급차 등 청소·소독 시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방수성 앞치마 등 착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예시
 -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D²) **선택 사용 가능**



- 1)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하절기 운영 수칙 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4920(20.6.10)) 참고
- 2) 우리나라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미국의 방식을 따라 레벨 A~D로 구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레벨D단계의 보호장비는 최소한의 피부와 호흡기 보호가 필요 시 착용하게 되며, 일회용 보호복 (후드타입), 일회용 마스크(N95 또는 KF94 등급의 마스크), 장갑, 고글 등으로 구성
 - 4종 또는 전신 보호복 충족 요건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호흡기	일회용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0	_
오읍기	PAPR(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필요 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눈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0	김서림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
	일회용 전신보호복	0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전신	일회용 장갑	0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의복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0	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앞치마	필요 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 서와 방법으로 착용
- *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 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바로 버림

구분	<u>±</u>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전신보호복 시용 시 순서	PAPR ¹⁾ 과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1	손위생	손위생		
	2	(속)장갑	(속)장갑		
	3	전신보호복 하부	전신보호복		
착의 (착용) 순서	4	신발커버(또는 장화)	신발커버(또는 장화)		
(작용) 순서	5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¹⁾		
	6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후두		
	7	전신보호복 상체후드 착용 및 여밈	전동식호흡기보호구와 후두 연결		
	8	(겉)장갑	(겉)장갑		
		(격리실 등 전염력이 있는 구역 밖에서	탈의)		
	1	손위생	(겉)장갑		
	2	눈에 보이는 오염 제거	장갑 소독		
	3	신발끈 풀기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EFOI2)	4	(겉)장갑	후드		
탈의 ²⁾ (제거) 순서	5	보호복 및 신발	전신보호복		
<u>군</u> 시	6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7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속)장갑		
	8	(속)장갑	손위생		
	9	손위생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Level D 개인보호복 착탈의법 영상 참조

- 1) PAPR과 후두 착·탈의 순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 권고에 따름
- 2) 보호구 벗는 괴정에서 장갑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손소독 후 다음 보호구를 탈의(제거)하는 것이 유용함

<개인보호구 Level D 착·탈의법(예시)>



_eve D 개인보호구 착의법

















개인보호구 착의 준비

속장갑 착용







지퍼를 끝까지 올린다



엄지고리 끼우기



신발끈 매듭 묶기



N95 마스크 착용준비



N95 마스크 착용



N95 마스크 밀착 확인



고글 착용



보호복 후드 착용



보호복 착의 점검



겉장갑 착용



보호목착의상태확인

서식 1

기관(시설별) 검사관리 대장

[보고 엑셀양식]

기과며		
<u>/ 1 1 0 0 </u>	٠	

검사관리(의뢰)대장

기관 담당자 연락처

순번	시도	시군구	기관구분	요양기관 번호	검체번호	검체채취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체온	증상유무	증상내용	검사결과	기타
1			요양병원		시설명 -연번	2020-12-21			남	37.3	1	발열두통		
2			정신병원		시설명 -연번	2020-12-21			Й	36	0	-		
3			정신요양시설		시설명 -연번	2020-12-21			남	36.5	0	-		

* 기관구분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재활시설, <mark>양로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mark>

서식 2 검체 인수인계 양식

	코로나19 검체 의뢰서								
의뢰 기관	기관구분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요양시설(입소) □ 정신요양·재활시설 □ 양로시설 □ 양로시설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담당자 성명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주 소								
검체 건수		총 00000건							
위 나	용으로 검치	│ 세를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0000보건소 성명:								
보건소	보건소장 귀하								

서식 3

시도별 선제검사 실적 보고

[보고 엑셀양식]

거주시설

검사시행 실적보고

,	시도	Ţ	담당자 /	성명	(연락처)	검	사일:		_
						갿	성사결과(명	!)	
	시도	기관구분	개소수	검사실시 인원(명)	계	양성	음성	진행중	비고
		소계							
		요양병원							
		정신병원							
	서울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							
		양로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소계							
		요양병원							
		정신병원							
	부산	요양시설							
		정신요양· 개활시설							
		양로시설							
		중증장애인							

* 기관구분 :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mark>양로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mark>

서식 4

물품관리 대장

물품관리 대장

보건소명

담당자 성명

분출일시	품목	수량	배포기관	수령인	서명	연락처
2020.12.25	개인보호구	1000	000정신병원	홍길동		000-000-000
2020.12.27	수송용기	1000	000요양병원	홍길동		
2020.12.27	검채체취 VTM	500	000요양시설			

* 보건소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활용하여 작성/보관

부록 1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담당자 연락처

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감염병대응과	이나래	02-361-5725	narae323@korea.kr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감염병대응과	장주원	042-229-1527	joowon415@korea.kr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감염병대응과	전은화	062-221-4121	jef1004@mail.go.kr
경북권질병대응센터 (대구, 경북)	감염병대응과	김숙현	053-550-0621	kbkdca@korea.kr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부산, 울산, 경남)	감염병대응과	이성희	051-260-3725	leeshsh00@korea.kr

부록 2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의사항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1)

- ①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 *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②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효기간 확인,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 *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액 준비
 - * 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 ③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참조
 - *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준비하고, 처리시간은 유효농도 0.1%(1,000ppm)기준 1분 이상 유지필요
 - * 암모니아 또는 다른 소독제와 혼합 금지
- ④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분사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하여 적신 후 표면을 닦음
- ⑤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에 유의할 것
- ⑥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 ⑦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바로 사용하며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
- ⑧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주의

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3판 IX.환경관리

부록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검사(취합검사) 기관 (20개)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 - 알림·자료- 공고/공시에서 변동정보 참고

연번	지역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		(의)삼광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57	02-3497-5100
2		씨젠의료재단 씨젠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320	1566-6500
3	서울	의료법인장원의료재단 유투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68 장원빌딩	02-910-2100
4	(6)	한국필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71	02-517-1728
5		BGK진단검사의학과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로 89 MG 빌딩 9층	070-4755-9780
6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72	02-3662-1107
7	부산 (2)	씨젠의료재단 씨젠부산의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1566-6500
8	TU ()	(의)삼광의료재단 에스엠엘부산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78 6층, 7층	051-802-5101
9	인천 (1)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91 (송도동 13-49)	1600-0021
10	대구 (2)	씨젠의료재단 대구경북검사센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1566-6500
11	41 T (2)	재사물의 교육 사고 에스씨일 30개구의원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95	1522-2999
12	광주(1)	씨젠의료재단 씨젠광주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5, 6층	062-655-2188
13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홍덕1로 13 홍덕IT밸리 A동	1800-0119
14		녹십자의료재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	1566-0131
15	경기	랩지노믹스 진단검사의학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75	031-628-0700
16	(6)	선함의원(에스큐랩, SQLab)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321 (중동) 선함빌딩	031-283-9270
17		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8	1899-1510
18		티씨엠랩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7 초이스빌딩 2층, 3층	031-698-2728
19	충북(1)	결핵연구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8-5	043-249-4950
20	전북(1)	이기은 진단검사의학과의원	전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전주원예능합백제로자점	063-255-9119